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방안에 대한 소고

1 서로

최근의 국제특허분쟁 동향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2001년 미국 지적재 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 로펌이 소송대리를 맡아 최종판결까지 약 1,999,000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 즉, 특허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경향과 함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최종판 결을 받기까지 통상 200만 달러 소요되는 바.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 과 일본의 제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소송비용에 관한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방안 마련 필요하다

2 관련 동향

최근 국제특허분쟁이 빈번 < 미국 특허보증 실시 예< 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 한 자국 기업에 대한 여러 가 지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 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기술수출에 있어서의 자 국 기업의 리스크 부담 해소 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자 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특허 보증(Patent Insurance)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특허보증은 특허침해책임보험(Patent Liability Insurance) 및 특허권행사보험 (Patent Pursuance Insurance)로 구분되는데, 특허침해책임보험의 경우 특허침해주장 에 대한 방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다. 또한, 특허권행사보험은 특허침 해소송 제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한다.

한편, 일본은 지적재산 수출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적 재산 수출보험은 외국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일본 업체로부터 도입한 지적재산의 로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 련된 기업의 부담을 해 소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또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정재관 KEA특허지원센터장

기고



PROGRAM ADMNISTRATOR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s Corporation	
CARRIER	 Indian Harbor Insurance Company (a subsidiary of XL Capital Ltd.) Evanston Insurance Company 	
LIMITS	-From \$250,000 to \$5,000,000 Each Claim -From \$250,000 to \$5,000,000 Annual Aggregate	
SIR/DEDUCTBLES	From \$2,500 to \$50,000 Each Claim	
COHNSURANCE	Minimum – 10%; Maximum – 25%	
UNACCEPTABLE CLASSES	None	
TERRITORY AVAILABILITY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Districts	

티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 �일본의 지적재산 수출보험 개요 �		
우, 일본 기술이전업체의	구 분	내 용
미회수금을 보상하는 보험		- 1997년도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아시아지역 업체들의 부도 등
제도이다. 일본은 이와 같	도입배경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로열티 미지불 사례 대응 - 기술수출 대비 기술수입 초과 해소를 위한 자국 지식재산의 활용
은 지적재산수출보험을 통		촉진 방안의 일환
해 해외업체에 이전한 특허		외국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일본 업체로부터 도입한 지적재산의
에 대한 로열티의 미회수	기본개념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 일본 기술이전업체의 미호수금 을 보상하는 보험제도
리스크를 해소하여 일본 업		고까맘고 그이상고 들
체들의 보유 특허기술의 해		- 해외로열티 미화수금 보장으로 기술 수출(지식재산 활용)
외이전 촉진을 꾀하고 있	실시목적	족진 도모 - 해외업체에 이잔한 특허에 대한 로열티의 미화수 리스크
다. 이는 결국, 자국 기업의		해소를 통한 일본 업체들의 보유 특허기술의 해외이전 촉진
기술 수출을 통한 지식재산		- 일본 기업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대상	- 특허, 의장,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및 게임 소프트 등 저작권 망라
목적이다.		
	담당기관	일본 무역보험(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 행정법인)

3. 시사점

세계 시장에서의 각국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과히 전쟁에 비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기업들 간의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해 심판 제 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 구축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제도화를 통하여 체 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제도의 구축을 통해 무형의 기술? 지재권과 관련된 분쟁 지원 및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특허 로 열티의 미회수 리스크 해소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 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보유 지식재산 권의 활용 또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